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Chungak 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151-5번지 일원  
 ■ 공급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67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코로나19 관련 주택전시관 운영 안내 사항

\*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택전시관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life.co.kr](http://www.elife.co.kr))를 통해 분양일정 및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건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주택전시관 방문은 사업주체가 고지한 방문 가능 기간 동안에만 입장이 가능하며, 사업주체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주택전시관 방문이 불가한 점 양지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상황에 따라 방문 인원의 축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방문 기간 내 방문 시 아래의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주택전시관 입장 시 마스크 미착용
- 주택전시관 입장 시 체온측정 윤도가 37.5도가 넘을 경우
- 주택전시관 입장 시 손 소독, 체온측정 등의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방문자 본인이 현재 자가격리대상자이거나, 가족 혹은 일상적 접촉이 짙은 지인 중에 자가격리대상자가 있는 경우
- 예약한 방문 날짜 또는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주택전시관 운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주택전시관 방문 가능 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은 주택전시관 내 분양 상담전화(☎1544-4299) 등을 통해 분양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척도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의 입장자모집공고 및 관련 법령 등을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척도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 7. 28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사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시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 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기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 10%) 원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07. 28.) 현재 사천시에 거주하거나 경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본분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공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등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사천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2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및 제23조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에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볼),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로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 중인 경우)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호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본분기준(세대구성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주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안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길임)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이들말, 사우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손자녀 등

- 「주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경우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볼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볼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기�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기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른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자금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나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월세민 및 도시재생※ 지역별/면적별 생 부자제공자,장애인,국 기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세대주 요건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필요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기인하여 기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기인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기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기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

일 이전에 미리 밀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할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준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률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준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에·부금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시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 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거래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반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일 기준은 향후 관련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전매제한 없음(「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3)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 지역 1년, 수도권의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서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 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 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전매)체결일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 후 구입하신 전자 수입인지를 반드시 구비하셔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시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계약자에게 있으며,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자격검증 서류제출 (당첨자 적격여부 확인)		계약체결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 정	2022.08.08.(월)		2022.08.09.(화)		2022.08.10.(수)	2022.08.19.(금)	2022.08.22.(월) ~ 08.25(목)		2022.08.30.(화) ~ 09.01.(목)	
방 법	인터넷 청약(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 주택전시관 방문 접수 - 사전방문예약제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10:00~14:00)</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ul> * 청약통장 기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 주택전시관</li> <li>- 경상남도 사천시 용강동 768</li> </ul>					

\* 고객님,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주택전시관 방문접수(10:00~14:00, 응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기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기입은행에서 청약접수 시 각 은행 본·지점의 운영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1. 공급규모 및 공급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사천시 건축과 - 43664호(2022.07.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년 07월 28일

■ 공급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동 151-5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4층, 지상 49층 4개동, 총 67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39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78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8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39세대 포함]

■ 입주예정시기 : 2026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수)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악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m <sup>2</sup> )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2000523	01	084.9269A	84A	84.9269	34.5413	119.4682	51.3532	170.8214	15.6475	134	13	13	26	4	13	69	65	3	
			02	084.8778B	84B	84.8778	35.4444	120.3222	51.3235	171.6458	15.6384	134	13	13	26	4	13	69	65	3
			03	084.7307C	84C	84.7307	34.0395	118.7702	51.2346	170.0047	15.6113	44	4	4	8	1	4	21	23	1
			04	084.5632D	84D	84.5632	34.3390	118.9022	51.1333	170.0354	15.5805	91	9	9	18	2	9	47	44	2
			05	112.1308A	112A	112.1308	44.9366	157.0674	67.8027	224.8701	20.6597	89	-	8	-	2	-	10	79	2
			06	112.8062B	112B	112.8062	45.5867	158.3929	68.2111	226.6040	20.7841	136	-	13	-	4	-	17	119	3
			07	124.9171	124	124.9171	49.7099	174.6270	75.5343	250.1613	23.0155	45	-	4	-	1	-	5	40	1
			08	138.7971A	138A	138.7971	57.6277	196.4248	83.9272	280.3520	25.5729	1	-	-	-	-	-	-	1	-
			09	138.1704B	138B	138.1704	60.3397	198.5101	83.5482	282.0583	25.4895	1	-	-	-	-	-	-	1	-
			10	138.4558C	138C	138.4558	60.6824	199.1382	83.7208	282.8590	25.5100	1	-	-	-	-	-	-	1	-
			11	138.5042D	138D	138.5042	58.3052	196.8094	83.7501	280.5594	25.5189	1	-	-	-	-	-	-	1	-
합 계											677	39	64	78	18	39	238	439	15	

### ■ 공동 유의사항

\* 주택형 구분은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주택전시관(홈페이지)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악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sup>2</sup>) X 0.3025)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악식 표기	동 (리인)	공급 세대수	공급개요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총 구분	대지비	건축비	부기세	총분양가	계약금(10%)		중도금(60%)												
								계약시	1개월이내	2023.01.20	2023.08.21	2024.03.20	2024.10.21	2025.05.20	2025.12.22	입주자정일						
84A	101동 3호, 4호	89	3층	1	45,070,056	321,949,944	367,020,000	10,000,000	26,702,000	36,702,000	36,702,000	36,702,000	36,702,000	36,702,000	36,702,000	36,702,000	36,702,000	36,702,000	36,702,000	110,106,000		
			4층	2	45,534,240	325,265,760	370,800,000	10,000,000	27,080,000	37,080,000	37,080,000	37,080,000	37,080,000	37,080,000	37,080,000	37,080,000	37,080,000	37,080,000	37,080,000	111,240,000		
			5~9층	10	45,999,652	328,590,348	374,590,000	10,000,000	27,459,000	37,459,000	37,459,000	37,459,000	37,459,000	37,459,000	37,459,000	37,459,000	37,459,000	37,459,000	37,459,000	112,377,000		
			10~19층	20	46,492,248	335,230,752	382,160,000	10,000,000	28,216,000	38,216,000	38,216,000	38,216,000	38,216,000	38,216,000	38,216,000	38,216,000	38,216,000	38,216,000	38,216,000	114,648,000		
			20~29층	18	47,857,616	341,862,384	389,720,000	10,000,000	28,972,000	38,972,000	38,972,000	38,972,000	38,972,000	38,972,000	38,972,000	38,972,000	38,972,000	38,972,000	38,972,000	116,916,000		
	103동 2호	45	30~39층	20	48,787,212	348,502,788	397,290,000	10,000,000	29,729,000	39,729,000	39,729,000	39,729,000	39,729,000	39,729,000	39,729,000	39,729,000	39,729,000	39,729,000	39,729,000	119,187,000		
			40~48층	18	50,180,992	358,459,008	408,640,000	10,000,000	30,864,000	40,864,000	40,864,000	40,864,000	40,864,000	40,864,000	40,864,000	40,864,000	40,864,000	40,864,000	40,864,000	122,592,000		
			4층	1	42,746,680	305,353,320	348,100,000	10,000,000	24,810,000	34,810,000	34,810,000	34,810,000	34,810,000	34,810,000	34,810,000	34,810,000	34,810,000	34,810,000	34,810,000	104,430,000		
			5~9층	5	43,212,092	308,677,908	351,890,000	10,000,000	25,189,000	35,189,000	35,189,000	35,189,000	35,189,000	35,189,000	35,189,000	35,189,000	35,189,000	35,189,000	35,189,000	105,567,000		
			10~1																			

103동 4호	45	3층	1	45,391,792	324,248,208	369,640,000	10,000,000	26,964,000	36,964,000	36,964,000	36,964,000	36,964,000	36,964,000	36,964,000	110,892,000	
		4층	1	45,859,660	327,590,340	373,450,000	10,000,000	27,345,000	37,345,000	37,345,000	37,345,000	37,345,000	37,345,000	37,345,000	112,035,000	
		5~9층	5	46,328,756	330,941,244	377,270,000	10,000,000	27,727,000	37,727,000	37,727,000	37,727,000	37,727,000	37,727,000	37,727,000	113,181,000	
		10~19층	10	47,264,492	337,625,508	384,890,000	10,000,000	28,489,000	38,489,000	38,489,000	38,489,000	38,489,000	38,489,000	38,489,000	115,467,000	
		20~29층	9	48,200,228	344,309,772	392,510,000	10,000,000	29,251,000	39,251,000	39,251,000	39,251,000	39,251,000	39,251,000	39,251,000	117,753,000	
		30~39층	10	49,135,964	350,994,036	400,130,000	10,000,000	30,013,000	40,013,000	40,013,000	40,013,000	40,013,000	40,013,000	40,013,000	120,039,000	
		40~48층	9	50,539,568	361,020,432	411,560,000	10,000,000	31,156,000	41,156,000	41,156,000	41,156,000	41,156,000	41,156,000	41,156,000	123,468,000	
104동 3호	44	4층	1	43,988,188	314,221,812	358,210,000	10,000,000	25,821,000	35,821,000	35,821,000	35,821,000	35,821,000	35,821,000	35,821,000	107,463,000	
		5~9층	5	44,456,056	317,563,944	362,020,000	10,000,000	26,202,000	36,202,000	36,202,000	36,202,000	36,202,000	36,202,000	36,202,000	108,606,000	
		10~19층	10	45,391,792	324,248,208	369,640,000	10,000,000	26,964,000	36,964,000	36,964,000	36,964,000	36,964,000	36,964,000	36,964,000	110,892,000	
		20~29층	9	46,328,756	330,941,244	377,270,000	10,000,000	27,727,000	37,727,000	37,727,000	37,727,000	37,727,000	37,727,000	37,727,000	113,181,000	
		30~39층	10	47,264,492	337,625,508	384,890,000	10,000,000	28,489,000	38,489,000	38,489,000	38,489,000	38,489,000	38,489,000	38,489,000	115,467,000	
		40~48층	9	48,668,096	347,651,904	396,320,000	10,000,000	29,632,000	39,632,000	39,632,000	39,632,000	39,632,000	39,632,000	39,632,000	118,896,000	
		4층	1	40,649,256	290,370,744	331,020,000	10,000,000	23,102,000	33,102,000	33,102,000	33,102,000	33,102,000	33,102,000	33,102,000	99,306,000	
84C 104동 2호	44	5~9층	5	41,110,984	293,669,016	334,780,000	10,000,000	23,478,000	33,478,000	33,478,000	33,478,000	33,478,000	33,478,000	33,478,000	100,434,000	
		10~19층	10	42,035,668	300,274,332	342,310,000	10,000,000	24,231,000	34,231,000	34,231,000	34,231,000	34,231,000	34,231,000	34,231,000	102,693,000	
		20~29층	9	42,959,124	306,870,876	349,830,000	10,000,000	24,983,000	34,983,000	34,983,000	34,983,000	34,983,000	34,983,000	34,983,000	104,949,000	
		30~39층	10	43,882,580	313,467,420	357,350,000	10,000,000	25,735,000	35,735,000	35,735,000	35,735,000	35,735,000	35,735,000	35,735,000	107,205,000	
		40~48층	9	45,268,992	323,371,008	368,640,000	10,000,000	26,864,000	36,864,000	36,864,000	36,864,000	36,864,000	36,864,000	36,864,000	110,592,000	
		3층	1	40,694,692	290,695,308	331,390,000	10,000,000	23,139,000	33,139,000	33,139,000	33,139,000	33,139,000	33,139,000	33,139,000	99,417,000	
		4층	1	41,156,420	293,993,580	335,150,000	10,000,000	23,515,000	33,515,000	33,515,000	33,515,000	33,515,000	33,515,000	33,515,000	100,545,000	
84D 103동 1호	46	5~9층	5	41,619,376	297,300,624	338,920,000	10,000,000	23,892,000	33,892,000	33,892,000	33,892,000	33,892,000	33,892,000	33,892,000	101,676,000	
		10~19층	10	42,544,060	303,905,940	346,450,000	10,000,000	24,645,000	34,645,000	34,645,000	34,645,000	34,645,000	34,645,000	34,645,000	103,935,000	
		20~29층	9	43,468,744	310,511,256	353,980,000	10,000,000	25,398,000	35,398,000	35,398,000	35,398,000	35,398,000	35,398,000	35,398,000	106,194,000	
		30~39층	10	44,394,656	317,125,344	361,520,000	10,000,000	26,152,000	36,152,000	36,152,000	36,152,000	36,152,000	36,152,000	36,152,000	108,456,000	
		40~49층	9	45,781,068	327,028,932	372,810,000	10,000,000	27,281,000	37,281,000	37,281,000	37,281,000	37,281,000	37,281,000	37,281,000	111,843,000	
		4층	1	43,007,016	307,212,984	350,220,000	10,000,000	25,022,000	35,022,000	35,022,000	35,022,000	35,022,000	35,022,000	35,022,000	105,066,000	
		5~9층	5	43,468,744	310,511,256	353,980,000	10,000,000	25,398,000	35,398,000	35,398,000	35,398,000	35,398,000	35,398,000	35,398,000	106,194,000	
112A 102동 1호, 3호	89	10~19층	10	44,394,656	317,125,344	361,520,000	10,000,000	26,152,000	36,152,000	36,152,000	36,152,000	36,152,000	36,152,000	36,152,000	108,456,000	
		20~29층	9	45,319,340	323,730,660	369,050,000	10,000,000	26,905,000	36,905,000	36,905,000	36,905,000	36,905,000	36,905,000	36,905,000	110,715,000	
		30~39층	10	46,244,024	330,335,976	376,580,000	10,000,000	27,658,000	37,658,000	37,658,000	37,658,000	37,658,000	37,658,000	37,658,000	112,974,000	
		40~49층	9	47,631,664	340,248,336	387,880,000	10,000,000	28,788,000	38,788,000	38,788,000	38,788,000	38,788,000	38,788,000	38,788,000	116,364,000	
		4층	2	65,974,300	428,432,455	537,250,000	10,000,000	43,725,000	53,725,000	53,725,000	53,725,000	53,725,000	53,725,000	53,725,000	161,175,000	
		5~9층	10	66,558,844	432,403,779	43,240,377	542,230,000	10,000,000	44,223,000	54,223,000	54,223,000	54,223,000	54,223,000	54,223,000	54,223,000	162,669,000
		10~19층	20	67,807,704	440,338,450	44,033,846	552,180,000	10,000,000	45,218,000	55,218,000	55,218,000	55,218,000	55,218,000	55,218,000	55,218,000	165,654,000
112B 101동 2호, 102동 2호,4호	136	20~29층	18	69,028,336	448,265,149	44,826,515	562,120,000	10,000,000	46,212,000	56,212,000	56,212,000	56,212,000	56,212,000	56,212,000	56,212,000	168,636,000
		30~39층	30	70,250,196	456,199,822	567,070,000	10,000,000	47,207,000	57,207,000	57,207,000	57,207,000	57,207,000	57,207,000	57,207,000	171,621,000	
		40~49층	28	71,768,004	466,056,360	568,105,818	587,000,000	10,000,000	4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176,100,000
		3층	3	64,990,672	422,044,843	42,204,485	529,240,000	10,000,000	42,924,000	52,924,000	52,924,000	52,924,000	52,924,000	52,924,000	52,924,000	158,772,000
		4층	3	65,607,128	426,048,666	42,604,806	534,260,000	10,000,000	43,426,000	53,426,000	53,426,000	53,426,000	53,426,000	53,426,000	53,426,000	160,278,000
		5~9층	15	66,223,584	430,051,287	43,005,129	539,280,000	10,000,000	43,928,000	53,928,000	53,928,000	53,928,000	53,928,000	53,928,000	53,928,000	161,784,000
		10~19층	30	67,455,268	438,049,757	43,804,975	549,310,000	10,000,000	44,931,000	54,931,000	54,931,000	54,931,000	54,931,000	54,931,000	54,931,000	164,793,000
124 101동 1호	45	20~29층	27	68,686,952	446,048,226	44,604,822	559,340,000	10,000,000	45,934,000	55,934,000	55,934,000	55,934,000	55,934,000	55,934,000	55,934,000	167,802,000
		30~39층	30	69,919,864	454,054,669	45,405,467	569,380,000	10,000,000	46,938,000	56,938,000	56,938,000	56,938,000	56,938,000	56,938,000	56,938,000	170,814,000
		40~49층	9	84,556,396	549,103,276	688,570,000	10,000,000	58,857,000	68,857,000	68,857,000	68,857,000	68,857,000	68,857,000	68,857,000	68,857,000	206,571,000
		3층	1	77,085,244	500,586,141	50,056,815	627,730,000	10,000,000	52,773,000	62,773,000	62,773,000	62,773,000	62,773,000	62,773,000	62,773,000	188,319,000
		4층	1	77,765,556	505,004,040	50,500,404	633,270,000	10,000,000	53,327,000	63,327,000	63,327,000	63,327,000	63,327,000	63,327,000	63,327,000	189,981,000
		5~9층	5	78,444,640	509,413,964	50,941,39										

- 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일체의 이익을 세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공급내금(미납내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사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료, 대출수료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활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외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기산됨)
  - 중도금, 전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납 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및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 금액은 환불 불가)
  -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일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부적격자로 판정됨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불가) 또한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 인감증명서와 효율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계약구비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며 신청방법 등은 발급기관(시, 구, 군, 읍, 면, 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 주체의 위탁관리업체가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의 형평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 등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등·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1.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약식 표기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특별공급 합계					
	국가 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84A	4	1	1	1	4	1	1	13	13	4	26	13	69					
84B	3	1	1	1	4	2	1	13	13	4	26	13	69					
84C	1	-	1	1	1	-	-	4	4	1	8	4	21					
84D	2	1	1	-	3	1	1	9	9	2	18	9	47					
112A	-	-	-	-	-	-	-	-	8	2	-	-	10					
112B	-	-	-	-	-	-	-	-	13	4	-	-	17					
124	-	-	-	-	-	-	-	-	4	1	-	-	5					
합 계	10	3	4	3	12	4	3	39	64	18	78	39	23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 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2. 특별공급 공통사항

#### ■ 특별공급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p>■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주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선정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 무주택세대주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li> </ul>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주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선정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li> </ul>
청약자격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85㎡ 이하 주택형 - 청약부금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인터넷접수(한국부동산원 청약홀)로 변경되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가 가능하나 14:00시 까지 접수해야하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셔야 함)  
 \*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4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합니다.  
 (현재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 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될)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차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와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을 경우, 상여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 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3.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39세대

## ■ 신청자격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아래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의 추첨을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입주자저축에 기입하여 청약통장 기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기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및 도시재생부지 제공자 제외)]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유형	추첨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경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애인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입주자저축에 기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경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중소기업근로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첨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64세대

## ■ 신청자격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 입주사서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입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제3항에 의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기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입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른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입신부부의 입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입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기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9호 미적용)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사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5명 이상 4명 3명	40 35 3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2명 1명	15 10 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5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 청약자가 성인(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인(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경상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입주자저축 기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78세대

####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준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입신의 경우 입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입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입신 시지속 시 입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입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입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기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기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9호 미적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세대에만 해당하며, 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혼인 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자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6호(2021.11.16.)]에 따릅니다.

####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 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⑤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노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 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 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등으로 확인합니다.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사천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여,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사천시)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총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10,424,798원~ 13,899,730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총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총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li> <li>-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li> <li>-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li> </ul>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본 밀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 지)	3억3,100만 원 이하	건축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기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기표준액 적용</li> </ul>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기표준액			
토지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4호(2021.02.02.)]) [별표 3]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 직인이 끌리면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위촉증명서, 해촉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월별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서류제출로 소득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주체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등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6.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18세대

### ■ 신청자격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기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소형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사천시)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7.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39세대

### ■ 신청자격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임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여,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리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 입주자저축에 기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소형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5호(2021.11.16.)]에 따릅니다.

###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총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총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인 가구	160%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총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밀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의 과세대상금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금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되며,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건축물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토지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택 외
			주택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거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사천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45호(2021.11.16.)]에 따름.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4호(2021.02.02.)] [별표 3])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특례신청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신청인서와 의료보험자격특례신청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위촉증명서, 해촉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월별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서류제출로 소득기간을 산정하며 사업주체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1.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p>
유의사항	<p>■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p> <p>■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p> <p>■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총, 동, 호 구분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 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p> <p>■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포함)도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함.</p> <p>■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종목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p> <p>■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p> <p>■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p> <p>■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새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p> <p>■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p> <p>■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p> <p>■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제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p> <p>■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이 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공급신청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p> <p>■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p> <p>■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p> <p>■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함.</p> <p>■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 <li>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li> </ul>

#### 2.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신청자격
----	----	-----	------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 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전용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저축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기입한 자</li> </ul>

### 3.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 분	경상남도 및 사천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기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입자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기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4.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1호

구 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li> <li>2) 소형·저기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li> </ol> </li> <li>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li> </ol>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li> <li>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공급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배우자도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경우</li> </ul> </li> <li>※ 2019.11.01.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li> <li>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li> <li>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li> </ul> </li> </ol>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기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기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기입일을 기준으로 기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5.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8세 이상 ~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2)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li> <li>※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합니다.</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체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의거 무주택세대원 신청 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제외)되지만 부양가족수 산정 시에는 주택 소유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 IV 청약 신청 일정, 장소 등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척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 대상자	신청 일시	신청 방법	신청 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10:00~14:00)	2022.08.08(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청약홈' 앱 • 사업주체 주택전시관(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일반공급	1순위	2022.08.09(화)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청약홈' 앱 • 청약통장 기입은행(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2순위	2022.08.10(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온행방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기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통장 기입은행에서 청약 접수 시 각 은행 본·지점의 운영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나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 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 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 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기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또는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 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동·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준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항)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이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3.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포함) 통장</li> <li>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 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사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ul>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사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ul>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사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ul>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입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V 당첨자 발표 일정

####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2.08.19(금)</li> <li>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또는 「청약홈」 앱에서 개별조회</li> </ul>
	2순위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전시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형,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전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8.19.(금) ~ 2022.08.28.(일)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접속 → 「청약당첨조회」→ 「당첨조회(최근10일)」</li> <li>- 스마트폰 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당첨조회(최근10일)」</li> </ul>	
휴대폰 문자서비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8.19.(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내폰 문자서비스는 정약진정사의 편의도모를 위한 무가서비스로서 정약진정사로부터 정약진정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ul> </li> <li>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전시 거주신청자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ul> </li> <li>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가능합니다.</li> <li>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특별공급 방문접수는 주택전시관에서만 가능하며 응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일반(기관주선)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척도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를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ul>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시 이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선정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VI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 1.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구비서류

####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구 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 제출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2022.08.22.(월) ~ 2022.08.25.(목) (10:00 ~ 17:00)	■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 주택전시관 - 경상남도 사천시 용감동 768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사전방문예약제 - 사업주체 홈페이지( <a href="http://www.elife.co.kr">www.elife.co.kr</a> )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	특별공급 추후 사업주체 홈페이지( <a href="http://www.elife.co.kr">www.elife.co.kr</a> ) 공지 (예비당첨자 별도 통보)		
	일반공급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성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2022.08.22.(월) ~ 2022.08.25.(목) 내에 관련 서류를 끝히 제출해야 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당분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주택전시관 방문 시 당첨자 본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서류제출 장소 :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 주택전시관(경상남도 사천시 용강동 768)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추첨, 계약일정은 추후 사업주체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8.(목)]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척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척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벌금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표1>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서류	○	①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장소에 비치(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주택전시관 방문 접수 시 제출)</li> <li>• 인터넷청약(청약Home(<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li> </ul>
	○	②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청약Home(<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li> <li>• 인터넷청약(청약Home(<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li> </ul>
	○	③ 무주택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장소에 비치</li> </ul>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장소에 비치</li> </ul>
	○	⑤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li> </ul>
	○	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li> </ul>
	○	⑦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li> </ul>
	○	⑧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⑨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li> </ul>
기관추천 당첨자	○	⑪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li> </ul>
	○	⑫ 단신부업 입증서류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 국내기업 ·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li> <li>-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li> <li>※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li> </ul>
	○	⑬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li> <li>- 직계존속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li> <li>-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li> <li>*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li> </ul> </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li> <li>※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li> </ul>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독세대일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또는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⑮ 복무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 복무 기간을 명시</li> </ul>
	○	⑯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li> <li>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기관추천	○	①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기관의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li> </ul>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①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수장소에 비치</li> <li>인터넷청약청약Home(<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li> </ul>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li> </ul>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li> <li>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li> <li>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li> </ul>
	○	⑤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 진단서만 인정)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ul>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수장소에 비치</li> </ul>
	○	⑦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가 입양인 경우</li> </ul>
	○	⑧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⑨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⑩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li> <li>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li> <li>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li> </ul>
	○	③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 진단서만 인정)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ul>
	○	④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의 경우</li> </ul>
	○	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접수장소에 비치</li> </ul>
	○	⑥ 소득증빙 서류 (〈표2〉 참고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li> </ul>
	○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고일 이후 발행문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회조건 : 전체</li> </ul>
	○	⑧ 비사업자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체 주택전시관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li> </ul>
	○	⑨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접속 등기열람(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ul>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신청자(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제출(주민등록등·초본 상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li> </ul>
	○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li> </ul>
	○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li> </ul>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 해당자 )			
	<input type="radio"/>	⑥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li> </ul>	
	<input type="radio"/>	⑦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li> <li>※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비속의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li> </ul>	
생애최초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input type="radio"/>	②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li> </ul>	
	<input type="radio"/>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li> </ul>	
	<input type="radio"/>	④ 소득증빙 서류 ( 표2 ) 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단,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li> </ul>	
	<input type="radio"/>	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회조건 : 전체 ※ 단,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li> </ul>	
	<input type="radio"/>	⑥ 비사업자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주제 주택전시관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li> </ul>	
	<input type="radio"/>	⑦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표3 ) 참고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합니다.</li> </ul>	
	<input type="radio"/>	⑨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li> <li>(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a href="http://www.ros.go.kr">www.ros.go.kr</a>) 접속 등기열람/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현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li> <li>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ul>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input type="radio"/>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li> </ul>	
	<input type="radio"/>	②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장소에 비치</li> </ul>	
	<input type="radio"/>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li> </ul>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표2)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사전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충급여액을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③ 소득금액증명 발급 불가 시 - 국민연금 기입자 : 연금산정용 기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기입한 경우만 인정) - 국민연금 미기입자 : 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부기기자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② 세무서 ③ 국민연금관리공단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소득금액증명 발급 불가 시 - 국민연금 기입자 : 연금산정용 기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 국민연금 미기입자 : 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부기기자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기입한 경우만 인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신규사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사업자의 경우) ② 국민연금 기입자 : 연금산정용 기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기입한 경우만 인정) ③ 국민연금 미기입자 : 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부기기자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기입한 경우만 인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세무서 또는 등기소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③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세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미발급 시 법인회계결산서 제출	① 세무서 ② 등기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계약금세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 기입내역 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주택전시관 비치 ② 세무서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위촉증명서, 해촉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월별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서류제출로 소득기간을 산정하며 사업주체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해당직장/세무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④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및 없는 경우)	①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 인정기준은 소득세 납부일이 아닌 실제 균무한 기간 기준입니다.

■ <표4>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 해당자 )			
공통서류	<input type="radio"/>	①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li> </ul>
	<input type="radio"/>	②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세대원, 뒷자리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li> </ul>
	<input type="radio"/>	③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li> </ul>
	<input type="radio"/>	④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li> </ul>
	<input type="radio"/>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input type="radio"/>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독세대일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또는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input type="radio"/>	⑦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li> </ul>
	<input type="radio"/>	⑧ 단신부임 입증서류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li> <li>-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li> </ul> </li> <li>※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항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li> <li>※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증명 첨부 필수</li> </ul>
	<input type="radio"/>	⑨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li> <li>※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li> <li>※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input type="radio"/>	⑩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li> </ul>
	<input type="radio"/>	⑪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li> <li>- 군 복무 기간을 명시</li> </ul>
• 가점제 당첨자 • 가점제 당첨 예비입주자	<input type="radio"/>	⑫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li>※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li> </ul>
	<input type="radio"/>	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li> </ul>
	<input type="radio"/>	⑭ 출입국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li> </ul> </li> <li>※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li> </ul>
	<input type="radio"/>	⑮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li> <li>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li> </ul>
	<input type="radio"/>	⑯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input type="radio"/>	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li> </ul>
	<input type="radio"/>	⑱ 출입국사실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li> <li>※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비속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li> </ul>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input type="radio"/>	⑲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li> </ul>
	<input type="radio"/>	⑳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장소에 비치</li> </ul>
	<input type="radio"/>	㉑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li> </ul>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input type="radio"/>	㉒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li> <li>•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li> <li>•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input type="radio"/>	㉓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li> </ul>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 계약 체결 일정 및 구비서류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통·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비고
당첨자 계약 체결	2022.08.30.(화) ~ 2022.09.01.(목) (10:00 ~ 17:00)	■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 주택전시관 - 경상남도 사천시 용강동 768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사전방문예약제 - 사업주체 홈페이지(www.elife.co.kr)

※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및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협	131-021-700527	대한토지신탁(주)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밸코니화장 공사비(추가선택품목 I) 및 추가선택품목(II)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 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치감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 1001동 701호 계약자 → '100107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①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②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③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④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	⑤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⑥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대리 계약 시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②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장소에 비치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인지세 납부금액 안내 : 인지세법 제3조 1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기재금액이 1억 초과 and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 10억초과인 경우 35만원)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V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1. 청약 관련 사항

-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저지르는 행위에 따라 처벌됩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 처리)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저당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주소,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사업주체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사업주체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해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를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무순위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3.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4. 벌칙 등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인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 주민등록번호, 주소,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기입하거나 기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저지르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 및 별표1 제1항 가목

-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 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③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 “소형 저가주택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 저가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평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평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평정 기준

- **경력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및 “분양권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령 제56호, 2018.12.11.) 부지 제3조)
  - ①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권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②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등” 처분 기준일(아래의 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③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④ 제2조 제7호의 2 단속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⑤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종합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제53조)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업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속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자로 봄)
    -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자로 봄)
      - ※ 가점제의 부양기준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60세 이상의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제외
    -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⑨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제28조(일반공급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자로 봄)
    -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7.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주택전시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시행위탁자)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대출취급기관은 계약일 이후 사업주체(시행위탁자)와 협의 후 별도 지정됩니다.
- ※ 사업주체(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도금무이자가 적용됩니다.
-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일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이자 대납 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 개시일 전일까지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와 대출취급기관이 별도 협약한 대출 만기일까지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남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 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보증금 대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임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임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시행위탁자)가 일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정부 정책, 대출 취급 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 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분양가 9억원 초과 세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보증 대상이 아니므로 중도금 집단 대출은 불가합니다.
-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기산됩니다.)하여야 합니다.
- ※ 또한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중도금 대출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대출 취급 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시장의 정책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가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일시 납부해야 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VIII | 발코니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및 추가선택품목(II)

## 1. 발코니확장 공사비(추가선택품목 I)

### ■ 발코니확장 공사비(추가선택품목 I)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계약시	2023.01.20	입주지정일
84A	14,500,000	1,450,000	2,900,000	10,150,000
84B	14,600,000	1,460,000	2,920,000	10,220,000
84C	14,400,000	1,440,000	2,880,000	10,080,000
84D	14,400,000	1,440,000	2,880,000	10,080,000
112A	19,000,000	1,900,000	3,800,000	13,300,000
112B	19,200,000	1,920,000	3,840,000	13,440,000
124	21,100,000	2,110,000	4,220,000	14,770,000
138A	23,800,000	2,380,000	4,760,000	16,660,000
138B	24,000,000	2,400,000	4,800,000	16,800,000
138C	24,100,000	2,410,000	4,820,000	16,870,000
138D	23,800,000	2,380,000	4,760,000	16,660,000

### ■ 발코니확장 공사비(추가선택품목 I)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협	131-021-743477	대한토지신탁(주)

※ 발코니확장 공사비(추가선택품목 I)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II)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추가선택품목 I) 중 중도금 납부일정은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첫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통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허락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01동 701호 계약자 → '100107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발코니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시행위탁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추가선택품목 I)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세제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추가선택품목 I)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신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별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일 이후에는 발코니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변경 및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미선택 시 시공 및 공간 부족등의 사유로 추가선택품목(II)선택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미선택 시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홈페이지 내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 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계약법령 해석 차이 등으로의 사유로 발코니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자료 및 사업주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사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색상이 실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선택 시 청호는 내utherford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침호규격 및 사양(유리, 청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미선택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홀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비확장 발코니에 선홀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또한 평면 및 시공 여건에 따라 선홀통 또는 배수구는 사업주체 홈페이지상 표현된 위치와 다르게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선택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 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방문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내부 형상이 산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걸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결로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나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미선택 시 세대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선택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풍·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선택 시 마이너스 옵션 선택으로 인해 미설치 되는 품목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비의 비용감소는 없습니다.

## 2. 추가선택품목(II)

### ■ 추가선택품목(II)

- 추가선택품목(II)은 시공사 디엘이앤씨(주)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등)은 주택전시관(분양사무소)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II)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발코니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는 계약과 별개이며 계약일정 및 내용, 납부일정 및 계좌, 제품상세내용 등을 추후 별도로 분양 계약자에게 공지 후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II) 판매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 발코니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선택안	설치위치	업체명	판매가격	비고
84A	ALT-1	거실+침실 1	삼성/LG	3,600,000	택 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ALT-2	거실+침실 1+침실 2+침실 3		6,480,000	
84B	ALT-1	거실+침실 1	삼성/LG	3,600,000	택 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ALT-2	거실+침실 1+침실 2+침실 3		6,480,000	
84C	ALT-1	거실+침실 1	삼성/LG	3,600,000	택 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ALT-2	거실+침실 1+침실 2+침실 3		6,480,000	
84D	ALT-1	거실+침실 1	삼성/LG	3,600,000	택 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ALT-2	거실+침실 1+침실 2+침실 3		6,480,000	
112A	ALT-1	거실+주방+침실 1	삼성/LG	5,300,000	택 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ALT-2	거실+주방+침실 1+침실 2+침실 3+침실 4		9,400,000	
112B	ALT-1	거실+주방+침실 1	삼성/LG	5,300,000	택 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ALT-2	거실+주방+침실 1+침실 2+침실 3+침실 4		9,400,000	
124	ALT-1	거실+주방+침실 1	삼성/LG	5,300,000	택 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ALT-2	거실+주방+침실 1+침실 2+침실 3+침실 4		9,400,000	
138A	ALT-1	거실+주방+침실 1	삼성/LG	5,350,000	택 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ALT-2	거실+주방+침실 1+침실 2+침실 3		8,200,000	
	ALT-3	거실+주방+침실 1+침실 2+침실 3+가족실		9,450,000	
138B	ALT-1	거실+주방+침실 1	삼성/LG	5,350,000	택 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ALT-2	거실+주방+침실 1+침실 2+침실 3		8,200,000	
	ALT-3	거실+주방+침실 1+침실 2+침실 3+가족실		9,450,000	
138C	ALT-1	거실+주방+침실 1	삼성/LG	5,350,000	택 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ALT-2	거실+주방+침실 1+침실 2+침실 3		8,200,000	
	ALT-3	거실+주방+침실 1+침실 2+침실 3+가족실		9,450,000	
138D	ALT-1	거실+주방+침실 1	삼성/LG	5,350,000	택 1 홈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ALT-2	거실+주방+침실 1+침실 2+침실 3		8,200,000	
	ALT-3	거실+주방+침실 1+침실 2+침실 3+가족실		9,450,000	

※ 실내기 및 실외기 모델은 주택형별, 가전사별, 실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판매 시 별도로 세부 안내 예정임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삼성, LG 제품 중 선택할 수 있고 (삼성의 경우 무풍에어컨만 제공) 공기청정기는 미장착된 일반형 제품임

## 2) 빌트인 가전제품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작용품목	주택형	제조사	구성내용 및 상품모델	판매가격	비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set	오브제컬렉션 84A, 84C, 84D 124, 138A	LG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오브제컬렉션 김치냉장고	BC4S1AA1 (G) BC3K1AA1 (G)	5,700,000 오브제컬렉션은 선택시 구성 및 색상은 변경 불가
	오브제컬렉션+ 팬트리장 84B, 112A, 112B 138B, 138C, 138D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 오브제컬렉션 김치냉장고 + 팬트리장	BC4S1AA1 (G) BC3K1AA1 (G)	
	비스포크 84A, 84C, 84D 124, 138A	삼성	비스포크 1 도어 냉장고 + 비스포크 1 도어 변온냉장고 +비스포크 1 도어 김치냉장고	RR40A7(9/8)95AP (satin) RZ24A5(9/8)G0AP (satin) RQ34A7(9/8)45AP (satin)	5,600,000 비스포크 선택시 구성 및 색상은 변경불가
	비스포크 + 팬트리장 84B, 112A, 112B 138B, 138C, 138D		비스포크 1 도어 냉장고 +비스포크 1 도어 변온냉장고 +비스포크 1 도어 김치냉장고 + 팬트리장	RR40A7(9/8)95AP (satin) RZ24A5(9/8)G0AP (satin) RQ34A7(9/8)45AP (satin)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 전타입	삼성	식기세척기(12 인용)	DW60A8375TE	택 1
	SK 매직	트리플케어 식기세척기 와이드(14 인용)	DWA-90R5B	1,350,000	
	LG	LG DIOS 식기세척기(12 인용)	DUB22SB	1,160,000	
전기오븐	전기오븐 전타입	SK 매직	스팀 오븐 레인지	EON-B401SA	택 1
	SK 매직	IOT 스팀 오븐 레인지	EON-B440SA	1,050,000	
전기쿡탑	하이브리드쿡탑 인덕션 전타입	SK 매직	인덕션구 + 하이라이트구	ERA-BT030	택 1
	SK 매직	보더리스 인덕션	IHR-BQ40E	1,950,000	
주방 TV	주방스마트 TV 전타입	-	13" 음성인식 스마트 주방TV	-	790,000

## 3) 블박이 가구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 위치 및 내용		판매가격	비고
주방 대형팬트리장	84A	대형팬트리장 (인출식서랍 포함)		1,700,000	미선택시 김치냉장고 설치공간
	84C, 84D	대형팬트리장 (인출식서랍 포함)		1,700,000	
	112B	대형팬트리장 (인출식서랍 포함)		1,700,000	
	124, 138A	대형팬트리장 (인출식서랍 포함)		1,700,000	
침실1 드레스룸 가구	84A	ALT-1	불박이장	4,050,000	택 1
	84A	ALT-2	불박이장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4,150,000	
	84B	ALT-1	불박이장	3,950,000	택 1
	84B	ALT-2	불박이장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3,900,000	
	84C	ALT-1	불박이장	2,600,000	택 1
	84C	ALT-2	불박이장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2,400,000	
	84D	ALT-1	불박이장	2,600,000	택 1
	84D	ALT-2	불박이장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2,400,000	
침실1 불박이장	112A	ALT-1	불박이장	3,500,000	택 1
	112A	ALT-2	불박이장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3,450,000	
	112B	ALT-1	불박이장	2,780,000	택 1
	112B	ALT-2	불박이장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2,900,000	
	124	ALT-1	불박이장	3,520,000	택 1
	124	ALT-2	불박이장 (의류관리기 설치공간 확보형)	3,550,000	
	84A	침실 1	침실 1 불박이장	2,450,000	
	84B	침실 1	침실 1 불박이장	2,450,000	
침실1 불박이장	84C	침실 1	침실 1 불박이장	2,080,000	
	84D	침실 1	침실 1 불박이장	2,080,000	
	112A	침실 1	침실 1 불박이장+A/F 오픈형 선반장+건식벽포함	10,500,000	
	112B	침실 1	침실 1 불박이장+A/F 오픈형 선반장+건식벽포함	10,350,000	

	124	침실 1	침실 1 불박이장	2,700,000	
침실 2 불박이장	84A	침실 2	침실 2 불박이장	1,250,000	
	84B	침실 2	침실 2 불박이장	1,250,000	
	84C	침실 2	침실 2 불박이장	1,400,000	
	84D	침실 2	침실 2 불박이장	1,400,000	
	112A	침실 2	침실 2 불박이장	1,100,000	
	112B	침실 2	침실 2 불박이장	1,250,000	
	124	침실 2	침실 2 불박이장	1,250,000	
	138A	침실 2	침실 2 불박이장	1,250,000	
	138B	침실 2	침실 2 불박이장	1,400,000	
	138C	침실 2	침실 2 불박이장	1,400,000	
	138D	침실 2	침실 2 불박이장	1,400,000	
침실 3 불박이장	84A	침실 3	침실 3 불박이장	1,400,000	
	84B	침실 3	침실 3 불박이장	1,400,000	
	84C	침실 3	침실 3 불박이장	1,250,000	
	84D	침실 3	침실 3 불박이장	1,250,000	
	112A	침실 3	침실 3 불박이장	1,400,000	
	124	침실 3	침실 3 불박이장	1,400,000	
	138A	침실 3	침실 3 불박이장	1,400,000	
	138B	침실 3	침실 3 불박이장	1,400,000	
	138C	침실 3	침실 3 불박이장	1,400,000	
	138D	침실 3	침실 3 불박이장	1,400,000	
침실 4 불박이장	112B	침실 4	침실 4 불박이장	1,250,000	
	124	침실 4	침실 4 불박이장	1,400,000	

## 4) 마감재

■ 마루  
포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품목	주택형	설치 위치 및 내용			판매가격	비고
광폭 동조플렉스 강마루	84A	ALT1	노르딕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침실1+침실2+침실3)	1,650,000	
		ALT2	골든플렉스 (143mm)		1,650,000	택 1
	84B	ALT1	노르딕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침실1+침실2+침실3)	1,650,000	
		ALT2	골든플렉스 (143mm)		1,650,000	택 1
	84C	ALT1	노르딕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침실1+침실2+침실3)	1,650,000	
		ALT2	골든플렉스 (143mm)		1,650,000	택 1
	84D	ALT1	노르딕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침실1+침실2+침실3)	1,650,000	
		ALT2	골든플렉스 (143mm)		1,650,000	택 1
	112A	ALT1	노르딕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침실1+침실2+침실3)	2,200,000	
		ALT2	골든플렉스 (143mm)		2,200,000	택 1
거실 아트월	112B	ALT1	노르딕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침실1+침실2+침실3)	2,200,000	
		ALT2	골든플렉스 (143mm)		2,200,000	택 1
	124	ALT1	노르딕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침실1+침실2+침실3)	2,430,000	
		ALT2	골든플렉스 (143mm)		2,430,000	택 1
	138A	ALT1	노르딕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침실1+침실2+침실3+가족실)	2,700,000	
		ALT2	골든플렉스 (143mm)		2,700,000	택 1
	138B	ALT1	노르딕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침실1+침실2+침실3+가족실)	2,700,000	
		ALT2	골든플렉스 (143mm)		2,700,000	택 1
	138C	ALT1	노르딕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침실1+침실2+침실3+가족실)	2,700,000	
		ALT2	골든플렉스 (143mm)		2,700,000	택 1
거실 디자인 패널	138D	ALT1	노르딕플렉스 (143mm)	(거실+주방+복도+침실 1+침실 2+침실 3+가족실)	2,700,000	
		ALT2	골든플렉스 (143mm)		2,700,000	택 1
	84A	ALT1	유광: IMPERIAL IVORY	세라믹패널 (거실 1 개면)	7,250,000	
		ALT2	반무광 : STATUARIO ORO		7,250,000	택 1
	84B	ALT1	유광: IMPERIAL IVORY	세라믹패널 (거실 1 개면)	6,100,000	
		ALT2	반무광 : STATUARIO ORO		6,100,000	택 1
	84C	ALT1	유광: IMPERIAL IVORY	세라믹패널 (거실 1 개면)	7,990,000	
		ALT2	반무광 : STATUARIO ORO		7,990,000	택 1
	84D	ALT1	유광: IMPERIAL IVORY	세라믹패널 (거실 1 개면)	7,990,000	
		ALT2	반무광 : STATUARIO ORO		7,990,000	택 1
거실 디자인 패널	112A	ALT1	유광: IMPERIAL IVORY	세라믹패널 (거실 1 개면)	7,600,000	
		ALT2	반무광 : STATUARIO ORO		7,600,000	택 1
	112B	ALT1	유광: IMPERIAL IVORY	세라믹패널 (거실 1 개면)	8,750,000	
		ALT2	반무광 : STATUARIO ORO		8,750,000	택 1
	124	ALT1	유광: IMPERIAL IVORY	세라믹패널 (거실 1 개면)	8,000,000	
		ALT2	반무광 : STATUARIO ORO		8,000,000	택 1
	138A	ALT1	유광: IMPERIAL IVORY	세라믹패널 (거실 1 개면)	3,800,000	
		ALT2	반무광 : STATUARIO ORO		3,800,000	택 1
	138B	ALT1	유광: IMPERIAL IVORY	세라믹패널 (거실 1 개면)	3,800,000	
		ALT2	반무광 : STATUARIO ORO		3,800,000	택 1
주방	138C	ALT1	유광: IMPERIAL IVORY	세라믹패널 (거실 1 개면)	3,800,000	
		ALT2	반무광 : STATUARIO ORO		3,800,000	택 1
	138D	ALT1	유광: IMPERIAL IVORY	세라믹패널 (거실 1 개면)	3,800,000	
		ALT2	반무광 : STATUARIO ORO		3,800,000	택 1
	84A	거실창주변 + 거실 1 개면 + 복도 일부면			1,000,000	
	84B	거실창주변 + 거실 1 개면 + 복도 일부면			1,000,000	
	84C	거실창주변 + 거실 1 개면 + 복도 일부면			1,350,000	
	84D	거실창주변 + 거실 1 개면 + 복도 일부면			1,350,000	
	112A	거실창주변 + 거실 1 개면 + 복도 일부면			1,100,000	
	112B	거실창주변 + 거실 1 개면 + 복도 일부면			1,650,000	
	124	거실창주변 + 거실 1 개면 + 복도 일부면			1,400,000	
	138A	거실창주변 + 거실 1 개면 + 복도 일부면			4,500,000	
	138B	거실창주변 + 거실 1 개면 + 복도 일부면			4,250,000	
	138C	거실창주변 + 거실 1 개면 + 복도 일부면			2,380,000	
	138D	거실창주변 + 거실 1 개면 + 복도 일부면			3,870,000	
주방	84A	ALT-1	실버쉐이드	주방상판 + 주방벽 + 조명 + 아일랜드장 상판	1,500,000	택 1

엔지니어드 스톤	ALT-2	알파마요		1,500,000	
	84B	ALT-1	실버쉐이드	2,300,000	택 1
		ALT-2	알파마요	2,300,000	
	84C	ALT-1	실버쉐이드	2,400,000	택 1
		ALT-2	알파마요	2,400,000	
	84D	ALT-1	실버쉐이드	2,400,000	택 1
		ALT-2	알파마요	2,400,000	
	112A	ALT-1	실버쉐이드	1,950,000	택 1
		ALT-2	알파마요	1,950,000	
	112B	ALT-1	실버쉐이드	2,400,000	택 1
		ALT-2	알파마요	2,400,000	
	124	ALT-1	실버쉐이드	2,630,000	택 1
		ALT-2	알파마요	2,630,000	
	138A	ALT-1	실버쉐이드	2,630,000	택 1
		ALT-2	알파마요	2,630,000	
	138B	ALT-1	실버쉐이드	2,200,000	택 1
		ALT-2	알파마요	2,200,000	
	138C	ALT-1	실버쉐이드	2,400,000	택 1
		ALT-2	알파마요	2,400,000	
	138D	ALT-1	실버쉐이드	2,070,000	택 1
		ALT-2	알파마요	2,070,000	

■ 옥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 위치 및 내용	판매가격	비고
옥실복합환풍기	전타입	옥실 복합환풍기 (옥실 1+옥실 2)	870,000	
세면대하부장+상부장 조명	84A,B,C,D	세면대 하부장 + 상부장 조명 (옥실 1+옥실 2)	1,600,000	옥실1기본제공 (세면대하부장 +상부장조명)
	112A,B			
	124			
	138A,B,C,D	세면대하부장+상부장조명(옥실 2)	900,000	
비데일체형양변기	전타입	비데일체형 양변기 (옥실 1+옥실 2)	750,000	

■ 조명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 위치	판매가격	비고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	84A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4,300,000	
	84B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4,300,000	
	84C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4,350,000	
	84D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4,350,000	
	112A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4,390,000	
	112B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4,600,000	
	124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4,400,000	
	138A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4,400,000	
	138B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4,350,000	
	138C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4,380,000	
	138D	거실 우물천장 직간접등 + 천장시트패널 + 디밍제어시스템	4,380,000	
침실 색온도 디밍제어 시스템	84A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침실 1+침실 2+침실 3)	420,000	
	84B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침실 1+침실 2+침실 3)	420,000	
	84D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침실 1+침실 2+침실 3)	420,000	
	84D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침실 1+침실 2+침실 3)	420,000	
	112A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침실 1+침실 2+침실 3+침실 4)	560,000	
	112B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침실 1+침실 2+침실 3+침실 4)	560,000	
	124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침실 1+침실 2+침실 3+침실 4)	560,000	
	138A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침실 1+침실 2+침실 3+가족실)	560,000	
	138B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침실 1+침실 2+침실 3+가족실)	560,000	
	138C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침실 1+침실 2+침실 3+가족실)	560,000	
	138D	색온도 디밍제어시스템 (침실 1+침실 2+침실 3+가족실)	560,000	

■ 현관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설치 위치	판매가격	비고
현관장	84A	오픈형 현관장 + 조명 + 에어브러쉬 + 신발살균기	1,970,000	
	84B	오픈형 현관장 + 조명 + 에어브러쉬 + 신발살균기	1,970,000	
	84C	오픈형 현관장 + 조명 + 에어브러쉬 + 신발살균기	1,970,000	
	84D	오픈형 현관장 + 조명 + 에어브러쉬 + 신발살균기	1,970,000	
	112A	오픈형 현관장 + 조명 + 에어브러쉬 + 신발살균기	2,980,000	
	112B	오픈형 현관장 + 조명 + 에어브러쉬 + 신발살균기	1,970,000	
	124	오픈형 현관장 + 조명 + 에어브러쉬 + 신발살균기	2,980,000	
	138A	오픈형 현관장 + 조명 + 에어브러쉬 + 신발살균기	2,980,000	
	138B	오픈형 현관장 + 조명 + 에어브러쉬 + 신발살균기	1,970,000	
	138C	오픈형 현관장 + 조명 + 에어브러쉬 + 신발살균기	1,970,000	
	138D	오픈형 현관장 + 조명 + 에어브러쉬 + 신발살균기	3,400,000	

현관중문	전타입	ALT1 ALT2	3연동 슬라이딩 (그레이) 3연동 슬라이딩 (브론즈)	1,800,000 1,800,000
------	-----	--------------	----------------------------------	------------------------

## ■ 추가선택품목(II)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II) 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504-358451	디엘이앤씨(주)

- \* 추가선택품목(II)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행사가 적의 조정한 추가선택품목에 준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II) 납부계좌는 공동주택 공급계약, 발코니확장 공사(추가선택품목 I)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척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통·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01동 701호 계약자 - '100107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추가선택품목(II) 관련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기준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자체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접수일정 및 선택방법은 계약체결기간 전에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안내에 따라 추가선택품목 선택 여부를 계약체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사 디엘이앤씨(주)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선택품목(II)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는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II) 판매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II) 중 시스템에어컨은 3년, 빌트인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전기 쿡탑) 2년, 현관중문은 2년, 불박이기구는 2년, 엔지니어드 스톤은 2년간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자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자는 제외)
- 미아너스옵션 및 발코니확장 미선택 세대는 추가선택품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관리문제 (발주 및 설치)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II) 제품의 모델 및 사양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 (제품의 품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 후 신모델 출시시 동제조사의 동급, 동가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시 동급, 동가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II)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II)은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거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II)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서 제품모델, 상품구성,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천장형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거실,침실1 2개소)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에는 일반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판매가격에는 기본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 비용이 정산되어 반영되었으므로 별도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단종(해당 제품의 품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변경,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질 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자가 제거되어,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블박이기구의 수납형태 및 내부구성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가구의 디자인, 내부 구성, 가구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 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은 움선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3구 가스쿡탑은 설치 및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차감 정산하였습니다.
- 식기세척기 옵션 선택 시 가구파anel 마감은 제조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콘센트가 추가로 설치되며 해당금액은 판매가격에 포함하였습니다.
- 삼성 비스포크 및 LG오브제 냉장고는 상기 표기된 바와 같이 주택형별로 맞춤 구성된 세트로만 판매하며, 상품의 조합 및 설치위치, 모델, 디자인, 색상은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고 계약자 개별선택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비스포크 냉장고/오브제 냉장고는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해당세트 구성 제품별 설치위치 포함)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단종(성능개선, 디자인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블박이 가구 움선선택 시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블박이 가구 움선은 가구의 수납형태 및 내부 구성과 규격은 주택타입별,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오픈형 신발장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에어브러쉬, 신발청소기는 설치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2, 침실3, 침실4 불박이장 옵션 선택 시 가구 설치를 위한 경량벽체가 가구 측면에 설치되며, 가구 설치로 인한 공간협소로 인해 침실문 옆에 설치된 스위치 및 온도조절기, 콘센트가 가구 측면 경량벽체로 이동 설치됩니다.
- 침실1 화장대에 설치되는 등기구는 화장대 크기에 따라 설치 개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침실1 드레스룸구구 옵션 선택 시 드레스룸에 설치되는 벽패널 마감은 본 공사 시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 미선택 시 도배지로 마감됩니다.
- 침실1 불박이기구 움선 선택 시 가려지는 벽체에 설치되는 콘센트 및 통신 포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침실1 불박이기구 옵션 선택 시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스위치, 콘센트, 배선기구, 다운라이트, 화재감지기 등)
- 현관중문은 시공상 중문을 또는 벽패널과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개폐방향은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본 공사 시 등등 이상의 제품(유리 포함)으로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사양 및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부위 아트월 (세라믹 패널) 및 벽 디자인 패널 마감 옵션 선택 시 마감두께 변경으로 인해 옵션 미선택세대 (디자인월 및 도배지 마감)에 비해 거실 내폭 실사용 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실 안쪽 치수가 도면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세라믹 패널)의 본공사시 마감은 나누기 및 패턴 연결선이 변경될 수 있으며 등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패널 본공사시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우물천장 조명 옵션 설치세대 천장 시트패널 마감은 본 공사 시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직간접 조명은 본 공사 시 등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육실 복합 환풍기 미선택 시 육실 안쪽에 환기 디퓨저가 설치되어, 복합 환풍기 선택시 육실 배기팬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합 환풍기 내 육실팬 기능이 있습니다.)
- 육실 복합 환풍기는 본 공사 시 등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육실 복합 환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육실 복합 환풍기의 리모콘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비데일체형양변기(육실1+육실2) 미선택시 육실1에는 투피스양변기와 분리형비데가 기본으로 설치되고 육실2에는 투피스양변기만 기본으로 설치됩니다.
-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 옵션 선택시 우물천장 시트 패널 마감되며, 우물 천장내 직부등이 삭제되고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으로 설치됨. 설치되는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은 상부 간접조명, 하부 직부형 조명으로 구성되며, 하부 직부형 조명은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 옵션 선택세대는 우물천장 시트 패널 마감으로 인해, 옵션 미선택 세대(도배지 마감)와 우물천장 깊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 옵션 선택 시 입주 후 고객이 조명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를 고려하여, 예비 스위치와 배선이 제공됩니다. 아울러 옵션 미선택 세대는 예비 스위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 옵션 선택 시 유지보수를 위한 SMPS 펀넬이 렌지 후드장 내부에 별도로 설치되며, 이로 인해 렌지 후드장 내부 수납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설치 위치는 본

상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은 라인조명 특성상 조명간 이음새가 발생하며 이음새의 위치와 수량은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에 설치되는 색온도 디밍 제어시스템은 조명의 밝기와 색온도(전구색~주광색)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추후 조명기구 및 스위치 교체 시 기능의 제한이 발생합니다.  
(거실에 설치되는 디밍제어시스템은 색온도 조절기능은 없습니다.)
- 하이브리드쿡탑/인덕션 전기쿡탑 선택과 무관하게 주방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와 스텐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능할 수 없습니다.

#### 4. 마이너스 옵션 품목

##### ■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 천장, 일반가구, 주방, 욕실, 창호,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 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미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①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거실, 주방, 식당, 복도, 침실〈타일〉 현관, 〈엔지니어드 스톤〉 현관디딤판, 〈타일〉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와 바닥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 슬리브
② 벽	벽지, 벽 도장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주방벽락판넬 인테리어 마감 콘센트, 스위치, 조명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콘센트, 스위치의 배관배선
③ 천장	천장지, 천장 도장(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몰딩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④ 일반가구	신발장, 파우더룸	-
⑤ 주방	주방가구 : 상, 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락판넬, 주방수전, 싱크볼, 후드, 콘센트, 스위치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 배기식트, 소방관련시설
⑥ 욕실	바닥타일, 락판넬, 천장재, 석재(인조대리석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 하부 코킹, 욕실 환풍기, 콘센트, 스위치, 욕실장, 샤워부스,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욕조, 부부욕실 비데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식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배관 배선
⑦ 창호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 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출,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발코니 도어 대피공간도어, 실외기 도어
⑧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
⑨ 기타	세탁실 및 발코니 수전, 현관 팬트리 출입문 및 내부 선반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사업주체 홈페이지 상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

주택형(타입)	84A	84B	84C	84D	112A	112B	124	138A	138B	138C	138D
금액	35,894,220	36,150,819	35,684,493	35,724,154	47,897,704	48,301,915	53,252,503	59,045,305	59,672,124	59,860,954	59,160,895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준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임금 납부 이후 미야너스 옵션 부문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기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문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운데,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기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사가 시공한 부문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공사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드레이인 설치가 불가하므로 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변식의 칸막이 제거(변경)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등을 지정하지 않으나,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재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청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건출, 노성)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주방가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기 시공된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가능한 제품 또는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계약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마이너스 옵션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IX 기타 계약자 안내

### 1.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기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자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 방문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2.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3. 입주예정월 및 부대복리시설 안내

#### ■ 입주예정월 : 2026년 03월 예정(경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자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자정기간 종료일 중 선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 입주자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자정기간 종료일 웃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 ■ 부대복리시설

- ※ 관리사무소, MDF실/방재실, 경비실, 경로당(시니어라운지), 어린이집, 키즈스테이션, 피트니스, GX룸, 라커/샤워실, 실내놀이터/다함께돌봄센터, 가족운동실, 개인오피스, 멀티룸, 실내스크린골프장, 스크린골프룸,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등

### 4. 친환경 주택 성능 수준 등

####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9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을 기준 만족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기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그 밖의 마감대승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체무자 · 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체무자 · 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체무자 · 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체무자 · 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체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체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체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체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7.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 정보통신 감리
상 호	(주)플랜에이건축사사무소	(주)한양기술단	(주)영설계엔지니어링
금 액	3,220,800,000	619,904,200	770,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8. 사업주체 현황

#### ■ 사업주체 현황

구 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 호	대한토지신탁(주)	삼천포역사개발(주)	디엘이앤씨(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996 2층 (공한면의점휴게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평동, 디타워돈의문)
법인등록번호	110111-1492513	110111-7869815	110111-7736808

### 9.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구 분	내진능력 (MMI 등급)
메르칼리 등급	VII - 0.239g

## X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공통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척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사이버 주택전시관), 모집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 여부 전신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 사실, 소득·자산 기준 초과 등 부적격으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 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사서죽을 사용한 당첨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사서죽 효력이 정질되어 새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 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와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및 추가선택품목금액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입주자정밀(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하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자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 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법적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 기타 유의 사항

###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냇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준공 후 현장AS 및 유지관리를 위해 현장사무실 및 입주지원센터, AS센터, 자체보관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협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브랜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계획승인도면(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면, 제반 권리와 계약을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사인물(BI 등) 설치 등을 위하여 옥탑, 지붕, 층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침실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층벽·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고, 입면특화 등을 위한 외부물정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높은 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타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승인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8월 20일부터 체결하는 분양권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 하여야합니다.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전시관



- 주택전시관은 84A, 112B타입으로 시공되었으며, 본인 등호수 시청 시 동일타입이라 하더라도 난사배치에 따라 주택전시관과 달리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나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은 밸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PVC창호,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고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추가선택품목(설치사항, 규격), 주택전시관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주택전시관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건립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시공부분, 단지모형,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CG, 세대VR 또는 사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홈페이지내 단위세대 VR (사이버 주택전시관) 창호 외부에 보이는 전경은 이미지일 뿐이며, 본 전경 이미지는 평형별 동호라인의 조망향에 따라 준공 후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VR에 표현되지 않은 각종 배선기구류 (스위치, 온도조절기, 콘센트 등) 및 설비 배관류 (가스배관, 계량기, 입상배관, 수전 등), 세대 분전함, 각종 점검구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등 상품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기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월판드, 스마트 주방TV(추가선택품목) 설치 위치 및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서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전시관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기타 홍보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시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의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의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홍보물을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며, 실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상세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됩니다.
- 본 주택전시관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액자 등 포함), 이동식 가구, 벽장식 패널미감, 디스플레이 기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전시용 조명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한 목적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미포함)
- 계약자가 회향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외부창호(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는 주택전시관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전시관 외부창호에 설치된 유리도 주택전시관용으로 본 공사시 창호 유리는 사업승인도서에 적합한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본 주택전시관은 일정 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환기 유니트,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환기구(급/배기용), 소방 감지기는 주택전시관용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먼박스, PL창호, 주방 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시각경보기,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여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소방설비는 주택전시관용 소방시설입니다)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블박이장 등)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 실별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 및 주택전시관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 오수 배관의 위치, 선통등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주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주변의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 설치된 CCTV, 소화기 등은 주택전시관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 설치된 조명은 직부등 및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으로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승강기,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계획승인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 준합니다.

#### ■ 설계 관련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공통사항

- 본 공동주택 건축공사 관련 「2022년 제1회 경상남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_2022.2.11.」에서 제시된 심의 조건사항 중 “외부인 이용 가능한 (별도 E.V) 스카이라운지 설치 및 공공이용시설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① 102동 최상층 49층에 외부인이 이용 가능한 스카이라운지(별도 E.V 포함)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구성될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외부인 이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② 당초 102동 지하 1층에 계획된 판매시설은 공공이용시설로 사전시에 공공기여될 예정이며, 분양계약자는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초고층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SHM(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을 통한 건물 건전도 감시장치)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SHM 설치 시,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분양계약자는 건물 준공 후, 상기 시설 일체의 운영 관리 및 유지 비용 부담 주체임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브랜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계획승인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사인물(BI 등) 설치 등을 위하여 유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침실의 벽체와 밸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밸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측벽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고, 입면특화 등을 위한 외부물딩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높은 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정해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돋기 위한 등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본 아파트 입구에 동일 브랜드(e편한세상) 아파트 건축계획이 추진될 경우, 본 아파트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 및 대지지분의 변경: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준공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 합니다.)
-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주택전시관,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응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과 단지 내·외 옹벽 및 구조물(D·A, 쓰레기분리수거장,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기타 제반시설 등)의 위치 및 이격거리는 사업승인도서, 분양 홈페이지, 공급안내, 단지배치도 및 단지모형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분양홍보자료 및 각종 홍보물을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양후 미학인으로 인한 물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 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단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단지모형,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VR 및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활용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단지모형,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사업주체와 무관하게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표현된 평면은 입면재료,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며,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내 용도,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등이 사업승인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응벽·석축 등의 종류 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용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용벽의 패턴, 마감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동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경관심의 및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응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총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광장, 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필로티, 주차장 환기구 및 각종 설비환경구(DA), 발전기실(DA), 전기실, 쓰레기 분리 보관소, 외부계단 및 외부 엘리베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 웨더스테이션, 판매시설 실외기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빛 공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역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랑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과정 및 현장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상구조물,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문양 포함), 동출입구, 밸코니 앞 장식물, 필로티(캐노피등),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DA급/배기창, 실외기실 형태, 주차장램프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형태 등의 변경이 경미할 시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밸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 내 인접 부지의 건축물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조망권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단지 내 도로 방향에 면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사용검사 전 소음측정을 통해 소음 기준이 미달할 시에는 단지 외곽 일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현황과 주택단지 현장 여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주택전시관에 비치되어 있는 배치도 및 사업부지 현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1층 주출입구 및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실내마감 설치계획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령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연의 금기/비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각동 1층 필로티 및 지상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분양홍보물(모형/배치도/등)을 참조 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는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용 D/A, 실외기 설치공간 위치 및 크기, 제연연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 위치는 사용성 및 자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 내 레벨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시설물은 계획사항으로 준공 시 시설물의 용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로 주차 후 동 출입구까지 동선길이가 길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내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층 환기를 위한 금·배기구가 다수 존재하며, 환기구와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과 조망권 침해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배치도를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은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공용전기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또는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층, 3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방성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 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각 동 및 호별로 계단 및 E/V실의 배치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에 비치되어 있는 동별 평면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12호)을 준수하여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밸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담장개방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택단지 인접 건물로 인하여 사생활 및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면상 보이는 외관 특화부분에 의하여 일부세대에서는 시야에 특화부분이 노출될수 있으며, 외부 특화에 의하여 세대내 창호 공틀 프레임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동 입면에 들어가는 BAPV(태양광판) 영역은 본공사 시 용량 계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전시된 단지모형 및 홍보자료(인터넷자료 포함), CG, 단위세대 VR, 참고이미지는 고객의 이해를 돋기위해 제작된 참고용으로 본공사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전시된 모형 및 CG등에 표현된 사업지 주변 도로, 가로수, 횡단보도, 유색포장, 안전휀스 등은 현황을 바탕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준공 후 달라 질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 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육외アン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판매시설 입면에 계획되는 외장재는 판매시설 MD계획(입점점포 규모계획)에 따라 산정되는 실외기 용량 및 실외기실 그릴 면적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정약 선반드시 확인 후 정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 102동 및 104동 옥상, 지하3층 102동 PIT, 지하1층 102동 EPS, 지상1층 102동 PIT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판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 단지

### ■ 공통사항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측벽 메지, 저층부 및 출입구 디자인, 판매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탑 구조물, 세대 및 부대시설 창호 크기 포함),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자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경관디자인과 협의) 법규의 변경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자체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은 고지 예정으로 추후 변경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시공사 사정에 따라 사업지 경계는 울타리 또는 철제난간으로 시공되며 주택전시관내 전시된 단지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웅복 또는 조경석이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웅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지하 등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건물과 건물사이의 보행자 통로, 주변 도로 및 단지외부의 공개공지 등으로 인한 소음과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이삿짐 사다리차를 이용할 경우 공개 공지 및 인도를 점용하여야 하는 관계로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조경시설물, 측면 로고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판매시설 및 단지 내 지하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및 판매시설 등의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 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요 방범 및 방재 활동 영역에 보안등이 설치될 예정이나, 본공사 시 수령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남쪽에 공동주택(향촌동아파트, 19층 규모) 및 도시형생활주택(리움비치힐 9층 규모)이 위치하며, 일부 동 및 일부세대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꼭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출입구 및 주변구간에 대하여 관계기관(자자체, 경찰서 등) 협의 결과에 따라 신호기, 획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추가, 변경 설치될 수 있습니다.
- 1층, 3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방화 공기안전매트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 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지하층 주변에는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저수조/우수저류조/정화조 등이 설치되어 냄새 및 미세한 진동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음.

## ■ 배치

- 단지내 주동배치 계획에 따른 일부 세대 영구 음영이 존재 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 대지 단차가 발생되며, 단차가 발생되는 구간에는 계단 및 경사로가 설치됨.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도시가스 정압기가 지상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및 냄새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균린생활시설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에 균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냄새 등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 당할 수 있습니다.
- 지상층에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용 구조물과 천장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주동

- 옥상 난간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 동 최상층은 승강기 운전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동의 옥상에는 TV안테나(104동), 태양광판넬(101,102,103동), 피뢰침, 일부 동 경관 조명, 웨더스테이션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 아파트 각 동 지상층에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설치됨에 따라 저층 일부 세대에 소음, 진동 및 조망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1층, 3층 로비 병풍설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 및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동출입구는 각 동호별로 전장 높이 및 마감재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마감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상의 필로티 위치는 동별마다 상이하며, 1개동 필로티로 설치 됩니다.
- 각 주동의 필로티에는 세대 진입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필로티와 인접한 세대는 보행자의 이동에 의한 소음 및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주동에 설치된 승강기의 인승 및 대수는 법적 기준에 접합하며, 승강기의 운행시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출입구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지상4층(기준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 주거동의 공용출입구(엘리베이터 출입구)의 창호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훈รม 및 기전설에 인접한 저층 세대(103동, 104동)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과 매연발생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발생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동의 1층 및 지하층에는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피트니스시설, 판매시설, 지하펌프실, 전기실등의 부속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입면에 태양광 판넬이 설치될 계획이라 조망침해 및 빛반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라 태양광 판넬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아파트 주동 옥상 및 지하에는 건물건전도 감시장치 시스템(Structural Health Monitoring) 구축을 위한 계측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건물건전도 감시장치 시스템의 가동을 위한 운영비가 입주후 관리비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내부 및 주동 출입구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부대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GX룸, 스크린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헬리컬라운지), 주민회의실, 키즈스테이션) 등이며 내부시설물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 (관리사무소 제외)와 디자인 등은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부대 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주민운동시설 제외)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물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하여야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난지내 외부시설(볼더이터, 휴게쉼터)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4동 1층에는 주민공동시설(경로당(시니어라운지), 어린이집, 키즈스테이션), 104동 2층에는 주민공동시설(GX룸, 라커/샤워실, 실내놀이터/다함께 돌봄센터, 가족운동실, 개인오피스, 멀티룸), 104동 지하 1층에는 주민공동시설(실내스크린골프장, 스크린골프룸), 102동 49층에는 주민공동시설(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등)이 위치하며 이용자의 사용 및 장비 운용에 의해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다목적실(CS센터)은 준공시 입주관리를 위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활용되며, 활용기간 동안(사용기간 변경 가능)은 당 시설의 이용이 제한 됩니다. 다목적실(CS센터)은 판매시설 일부 영역을 활용하여 계획됩니다.
- 단지 지하1층 및 지상1~2층, 49층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 또는 판매시설 등 각 시설에 필요한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등 입주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에 적용되는 공기청정형 냉난방기의 경우 실별 시스템에 따라 일부 구간은 일반형 냉난방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우나 시설은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인 대상으로 영업하고자 할 경우 별도 시스템 구성 및 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스카이 라운지의 경우 입주민 외 일반인에게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조경

- 단지조경, 세부 식재계획 및 조경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 평가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 세부 식재 공사중 토심 확보등의 사유로 지표높이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 상부는 전기 및 기계 설비와 관련한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됩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공간에 회자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4개층으로 구성되며, 주차대수의 배분은 주동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주차장 차로의 너비는 6.0m 이상,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지하1층, 지하2층 2.7m(택배차량진입 가능), 지하3층, 지하4층 2.3m(택배차량 진입 불가), 주차면은 2.1m 이상이며, 유효 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지하주차장의 진출입이 설치되는 주변의 저층부 일부세대는 차량의 진 출입시 차량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소음, 매연, 진동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훈발 및 기기전실(103동, 104동 지하층)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과 매연발생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발생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환기/채광을 위하여 천창 및 DA가 설치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골조 구조상으로 인해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이 일부 존재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지붕 구조물에 대해서 저층 일부 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도서상의 실선을 기준으로 구획되어 있고, 주차구획선 표기 실 좌·우측 부분에 편차가 생길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을 위한 주차구획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전기차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 판매시설의 주차는 별도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 주출입구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1개소는 동측 도로에 위치하며, 진입 1차로, 진출 2차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문주 형태, 위치, 마감재, 커러등이 상세계획 변경에 따라 공사중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 옥상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파널, 공청안테나,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유시설물에 근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을 환기 및 채광을 위한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될 수 있고, 단지 배치상 저층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지하 환풍구 소음이나 바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나 자세한 내용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 진출입구,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 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동과 인접한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측면이나 상부에는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되어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침해 등으로 사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25층은 피난안전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장비 가동시 상부층과 하부층에 소음이 전달될 우려가 있으며,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 및 일부 주동 외벽면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인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수량, 위치,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창문에서 태양광 집광판 및 관련 설비가 보일 수 있으며, 경관 침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지하PIT 또는 훈룸에는 짐수정 및 배수펌프,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는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인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을 위치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보안등 및 CCTV 위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으며,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103동, 104동 인근 지하 발전기실에는 전기안전공사 점검 년 1회 및 관리사무소의 비정기적 발전기의 시운전시 D.A를 통한 매연발생 및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103동, 104동 인근 지하 층에는 전기실 · 발전기실등의 급기/배기기를 위한 D.A(환경구)가 지상에 설치되어 인접세대에 소음, 냄새, 진동, 매연발생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 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 단위세대

### ■ 공통사항

- 주택전시관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기본형(비확장)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 및 부속 철물류,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 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동등 이성의 정동제품으로 사용됩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라 하더라도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인근 도로의 특성상 발생되는 소음,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불편할 수 있으며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해당 동 호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2.3M이며 본 공사시 세대내 천장높이는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택형별 각 실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환기디퓨저, 공기질센서(주방 1개소 설치),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와 사양, 설치개소는 사업승인도서 및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전기 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 월패드, 콘센트 및 스위치, 소방시설, 디퓨저, 바닥배수구 및 배선기구류 등의 위치와 사양 및 수량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차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자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자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 합니다.
  - 실 시공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악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확장시 외부창호는 이중창호[PL창]가 설치되며, 창호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 제품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단, 비확장시 외부골조에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외기실은 그릴창으로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는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형을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등기구 수량, 램프 및 배선기구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다를 수 있으며, 사양(램프의 종류 및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수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천장구간 배관으로 마감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세대의 천장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등박스의 크기, 시스템에어컨(옵션 선택 시), 스프링클러 헤드, 원형 디퓨저 등 천장부분이 변경(위치 및 깊이 등)될 수 있습니다.
  - 경량벽체는 시장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조직 벽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외부창호 설치 기준은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사용 시 원활한 에어컨 동작을 위해 실외기실에 있는 그릴창 및 방충망을 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 빌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청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평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악간의 차이가 있으나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설계 및 시공상의 이유로 세대의 모든 난간대 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단위세대 커텐박스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다르게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기기의 전화 통화 기능은 KT 일반전화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 또는 측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므로 가스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 및 가구가 용량/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일부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시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대 환기장비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환기장비 설치등으로 인하여 소음발생 및 발코니 천장높이 및 문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 도면의 각 세대 주방 창호 크기는 창호 프레임 끝단 간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대 내측에서 창호 프레임 일부가 마감재로 덮혀져 시공되므로 세대 내부에서는 창호 크기가 실제 크기보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하부가 공동주택에서 최하층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의 실외기실 바닥에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모든 세대의 실외기실에는 상부 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내려오는 공간 및 대피를 위한 동선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위반 시 제반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월패드의 설치 위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립세대에 설치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고하시어 계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위치, 콘센트, 월패드류의 제품은 기능과 미관 향상을 위해 색상, 디자인, 버튼 구성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주방, 침실의 콘센트 중 일부는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되며, 의류관리기 등 고용량 가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방 가구 부착형 콘센트의 수량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기질 센서의 위치와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팜플릿에 적용된 마감 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히 및 의장등록 또는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 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미포함 품목이 혼합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 색채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露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 으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단열공사 외 훈기 불량, 시공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시공사의 책임이 없음)
  - 세대 내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 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목재문, 가구 및 디자인 월, 디자인 패널 등의 인테리어 시트는 자재 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및 욕실 도어 프레임의 사이즈, 재질, 단자,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 스톤, 타일, 랙패널, 거실 디자인 월, 복도 패널 등의 마감재는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창 프레임의 규격이나 소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추가선택품목 포함) 및 일반가구(추가선택품목 포함)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렌지후드 상부장에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및 벽체마감재의 이음 부분이 노출되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욕실, 발코니의 바닥타일 패턴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자재의 컬러나 무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자처리에 대한 보수 등 해당 자재 교체시 기준 시공 마감재와 색상 및 패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 상부 물딩의 규격 및 형태, 재질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통신단자함 및 전기분전함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과 디자인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내부 수납 치수 및 인조대리석 선반의 마감 디테일(치수,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 높이는 설비, 전기 등의 배관, 배선 공사 시 기능상의 이유로 높이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에어컨 배관을 위해 거실에 스텐드형 일반 에어컨용 냉매배관, 침실에 벽부형 일반 에어컨용 냉매배관이 설치되어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부세대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발생 및 사생활 침해 피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화재시 피난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 해당세대, 하부1개 층 세대는 개폐시 알림경보가 울리게 됨)

- 추가선택품목(가구, 가전, 마감 등)은 계약선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옵션 및 평면 전택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나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축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콘센트, 스위치(일괄소등 스위치 포함), 월패드 등의 제품은 기능과 미관 향상을 위해 색상, 디자인, 버튼 구성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통신단자함은 현관팬트리 내부에 매입설치(커버노출)되며 이로 인해 참고 내부의 시스템선반 구성이 일부 변경 및 삭제 되거나 거실 복도 벽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변경으로 인해 전기분전함은 침실1(방방)벽에 매입설치(커버노출)되며 이로 인해 침실 벽두께가 변경될 수 있고 가구 배치에 제약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단자함과 전기 분전함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현관 인근에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되며, 일괄소등 스위치의 성능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 용량 및 분전 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비확장 발코니 및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나 천정내부에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 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추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다용도실 빌래건조대, 거실 벽걸이 TV등의 설치 시 매립배관 위치를 시공자가 관리소 보관증인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내 벽체에는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 등의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므로(보통 수직 형성) 뭇질 또는 브라켓 고정 등 벽체 파손을 지양해야 하며, 벽체 및 배관 파손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일랜드장(추가선택품목)의 위치이동은 지양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선전관이 노출되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천장과 다용도실(주방발코니)에는 배관 및 장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본 공사시 욕실장, 세면기 하부장 등이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선택형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다용도실, 욕실 (샤워부스 포함), 현관, 실외기실 등의 단자는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현관 디딤석은 엔지니어드스톤의 특성상 무늬, 색깔 등이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됩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세대내 일상관, 디퓨저, 수전, 배수구, 스위치, 콘센트의 위치 등은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적용모델은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추가선택품목(옵션)으로 제공되며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전시관의 경우 자체 난방을 위해 난방방 겸용 제품 설치) 또한 본 공사시 설치위치, 사양 및 디자인,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등기구 위치 및 사양, 디자인은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적용될 가전기기(추가선택품목)의 모델사항은 제조사의 사정에 의해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세대창호(외부창호 및 목창호,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도어 등)의 사양 및 손잡이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가구(추가선택품목 포함)의 제조사, 디자인, 시공 디테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목창호에 설치된 하드웨어 (손잡이, 경첩, 스토퍼, 손끼임 방지장치 등)는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색상 등으로 주택전시 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장 후면은 별도의 락페널 마감이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설치된 빌트인 가전(비스포크 냉장고/오븐제 냉장고/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빌트인 전기오븐/식기세척기 등)은 추가선택품목(옵션)으로 제공되며,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가구류(신발장, 주방가구, 욕실가구 등)의 설치로 인하여 노출되지 않는 부위의 후면, 천장, 측면, 바닥면은 최종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 공간은 세탁기 및 건조기 사양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모든 사양 및 치수는 확장형 기준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전시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POP 포함)와 본공사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내에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불박이장 설치시 반드시 실측치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주택전시관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다로그 및 각종인쇄물, 주택전시관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합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텀청소년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욕실선반) 엔지니어드스톤류(현관디딤판, 주방상판, 화장대 상판 등)는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자처리에 대한 보수 등 해당 자재 교체시 기준 시공 마감재와 색상 및 패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와 기타층 세대간 천장속 공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바닥은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는 공동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의 깊이와 크기는 본 공사시 각종 설비배관 및 멕트, 등기구 설치 등으로 인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다용도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각종 패널류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목창호,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현관팬트리, 다용도실, 실외기실 등 도장으로 마감되는 부위의 벽체하부에 오염방지 도장이 시공되며, 도장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침실 목창호 문선에 도배홀이 설치되며(일부 미설치 부위 제외), 미관 및 시공상의 이유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 욕실, 현관(현관 팬트리), 실외기실, 다용도실 바닥의 타일은 출눈색상 및 패턴(나누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타입 단위세대내 가설 디자인월 및 복도패널 마감부위의 경우 본 공사시 나누기 및 상세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주택전시관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남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 없습니다.(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욕실 천장재의 점검구 위치 및 크기, 개소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은 습식사용을 목적으로 배수구가 배치되었습니다. 건식으로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배수구의 봉수 손실에 의한 배관 냄새가 역류될 수 있으니 관리 및 유의 바랍니다.
- 부부욕실에 설치되는 샤워부스는 접합유리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협력업체 계약관계에 따라 디자인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욕실도어 하부에 설치되는 인조대리석 도어씰은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부위는 디자인월 마감으로 출눈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배선이 노출됩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 및 분양 안내자체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분할,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 방화문은 본공사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등에 타커핀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 주방가구는 확장형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본형은 주방가구 배치가 변경되고, 설치 수납가구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 다용도실에 전시된 건조기는 전기식 건조기 설치사례로 시공 미포함 항목이며, 가스식 건조기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외부창호 유리는 주택전시관용임)
- 발코니 확장시 설치되는 외부창호 외부면은 1면 착색프레임이 설치되고 내부 1면은 시트 랩핑으로 마감되며, 본 공사시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마감과 다소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외부창호의 크기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주택전시관 또는 각종 홍보물상의 사진 및 이미지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난간높이, 입면의 형태,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등이 분양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밸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밸코니 외부창호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설치공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밸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밸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밸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밸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露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밸코니에는 필요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밸코니 확장시, 선풍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는 사용상 간섭을 줄이기 위해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밸코니 난간대의 형태, 나누기, 고정방식, 색상, 프레임 두께 및 재질 디테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자는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이, 실외기실에 에어컨설비와 함께 설치됩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짹수층과 출수층 위치가 교차되어 설치되며, 본 공사시 하향식 피난구의 제조사,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천장에 설치되는 환기장비는 하향식 피난구의 위치에 따라 세대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본 공사시 덕트가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본 공사시 실외기실 바닥 및 천장 높이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설치 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다용도실내 세탁수전, 배수구 등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다용도실 천장에 설비 배관 및 렌지후드용 팬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설치위치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시 점검구의 크기 및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실외기실에 에어컨 냉방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내 입상배관 및 배수구 등의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에어컨 실외기실내 환기장비, 환기조절기, 조명기구, 스위치 등의 위치와 사양은 사업승인도서 및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밸코니 확장 부문의 외부창호는 PVC재질로 설치되며, 회사의 도산 및 제품 단종 등의 사유로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손잡이, 유리/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모든 목창호(욕실 포함)의 하드웨어(경첩, 손잡이, 스토퍼 등)는 본 공사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손기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창호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표기한 주방 가스배관 설치위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밸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기계환기설비는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 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 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 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 거실 및 침실, 욕실 등에 설치된 환기 디퓨저는 본 공사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에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됩니다. 아울러 자동식 소화기 조작부가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렌지후드 덕트, 자동식 소화기 및 직간접 조명(음선선택품목)SMPSI가 설치되어 수납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 본 공사시 세대 옥조는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현관 부위에 설치된 일괄소등 스위치의 성능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택형별 각 실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환기디퓨저, 공기질센서(주방 1개소 설치),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와 사양, 설치개소는 사업승인도서 및 주택 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거실에 설치된 조명 스위치와 월패드의 성능 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세대내에 설치된 콘센트는 법적 설치기준에 의거 일부 콘센트의 2구 중 1구가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로 제공됩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환기디퓨저, 조명기구, 콘센트, 배수구, 위생기구, 수전, 악세사리류 등의 위치와 사양은 본 공사시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식탁용 팬던트 예비 스위치가 제공되며, 별도의 주방 식탁용 팬던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추가선택품목 공사 미 선택” 세대 내 에어컨 배관을 위해 거실에 스텐드형 일반 에어컨용 냉매박스, 침실에는 벽부형 일반 에어컨용 냉매박스, 실외기실에 실외기 연결을 위한 냉매박스가 설치되며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세대는 실외기실에 실외기 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밸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및 급수급탕분배기, 온수분배기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실외기가 테라스에 설치되어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정내부의 설비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동 빨래건조대, 욕실스피카폰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후 임의대로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스마트 주방TV는 추가선택품목으로 미 선택 시 주방TV 및 전원, 통신 배선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 2층 이상의 세대 밸코니에 인접세대 대피를 위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단, 1개층 필로티 세대의 경우 3층이상의 세대에만 설치되며 2개층 필로티 세대의 경우 3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 대신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보조주방 천정 내부에 렌지후드 팬 장비가 설치되며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112㎡A형, 124㎡형, 138㎡A형 침실2는 구조설계에 의한 기둥이 있고, 불밖이장 옵션 미 선택 시 벽체가 돌출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세대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밸코니 / 실외기실

- 본 공사시 외부창호의 크기는 설치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주택전시관 또는 각종 홍보물상의 사진 및 이미지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밸코니 난간높이, 입면의 형태,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등이 분양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후면 밸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밸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밸코니 샷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밸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밸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밸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 (에어컨) 실외기는 세대 내 실외기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기동시 인접한 실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밸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외기와 실내 간 온도 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밸코니에는 필요시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밸코니 확장시, 선풍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세대 인접세대 (상하좌우)의 확장의 경우 비확장세대에서 단열로 인한 밸코니 면적 및 층고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벽체 및 가구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에는 개폐형 방충망이 설치되며, 그릴창 및 방충망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는 사용상 간섭을 줄이기 위해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밸코니 확장시 다용도실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터닝도어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방화도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밸코니 난간대의 형태, 나누기, 고정방식, 색상, 프레임 두께 및 재질 디테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자는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이, 실외기실에 에어컨설비와 함께 설치됩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짹수층과 출수층 위치가 교차되어 설치되며, 본 공사시 하향식 피난구의 제조사,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벽부형 조명기구는 하향식 피난구 열림(개폐) 방향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최상층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의 실외기실 바닥에 설치되며, 2층 이상의 모든 세대와 일부 1층세대의 실외기실에는 상부 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내려오는 공간 및 대피를 위한 동선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위반 시 제반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와 세대 환기장치가 세대 내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이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설치장소에 설치되는 환기장비는 하향식 피난구의 위치에 따라 세대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하여, 본 공사시 닥트가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본 공사시 다용도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설치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다용도실에 가스배관, 드레인 및 선호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다용도실에 설치된 세탁수전, 배수구, 천장 점검구 등의 설치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음선선택시 실외기설치에 에어컨 냉매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에어컨 실외기설내 입상배관 및 배수구 등의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에어컨 실외기설내 환기장비, 환기조절기, 조명기구, 스위치 등의 위치와 사양은 사업승인도서 및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우수 선호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배수구가 설치되는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발코니 천정 내부에 렌지후드 팬 장비가 설치되며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 창호

- 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구조검토 및 안전성에 따라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샷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회사의 도산 및 제품 단종 등의 사유로 창호상당(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손잡이, 유리,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외부창호(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는 주택전시관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전시관 외부창호에 설치된 유리도 주택전시관용으로 본 공사시 창호 유리는 사업승인도서에 적합한 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세대내 모든 목창호(목실 포함)의 하드웨어(경첩, 손잡이, 스토퍼 등)는 본 공사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기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창호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전기 설비

- 본 공사시 통신단자함은 현관 팬트리 공간에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수납내부의 시스템선반 구성이 일부 변경되거나 거실 복도 벽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변경으로 인해 전기 분전함은 침실(안방)벽에 노출되어 시공되어, 주택형별 설치위치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비 배관 점검과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 욕실에 설치된 점검구는 본 공사시 크기 및 위치, 설치개소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은 습식사용을 목적으로 배수구가 배치되었습니다. 건식으로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배수구의 봉수 손실에 의한 배관 냄새가 역류될 수 있으니 관리 및 유의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에 표기한 주방 가스배관 설치위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기계환기설비는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장치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덕트가 설치됩니다.(덕트 노출을 가리기 위해 해당타입 침실 커텐박스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 거실 및 침실, 욕실 등에 설치된 환기 디퓨저는 본 공사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에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됩니다. 아울러 자동식 소화기 조작부가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욕조는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현관 부위에 설치된 일괄소등 스위치의 성능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택형별 각 실에 설치되는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환기디퓨저, 공기질센서, 운도조절기 등의 위치와 사양, 설치개소는 사업승인도서 및 주택 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거실에 설치된 조명 스위치와 월패드의 성능 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세대내에 설치된 콘센트는 법적 설치기준에 의거 일부 콘센트의 2구 중 1구가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로 제공됩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환기디퓨저, 조명기구, 콘센트, 배수구, 위생기구, 수전, 악세사리류 등의 위치와 사양은 본 공사시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본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에는 전력 및 통신인입을 위한 시설물인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보안등 및 CCTV 위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본 공사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으며,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3, 104동 인근 지하층에는 전기실 · 발전기실등의 금기/배기기 위한 D.A(환기구)가 지상에 설치되어 인접세대에 소음, 냄새, 진동, 매연발생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로서 정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정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품목(가구, 가전, 마감 등)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음선 및 평면 선택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상 3층~4층(필로티 포함)과 최상층 확장형 세대는 세대 내 방문을 위하여 청족에 방범용 동체 감지기가 설치되며, 비확장형 세대는 발코니에 설치됩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는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 동 및 일부 층에는 축벽용 피뢰첨이 시공됩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는 101동, 102동, 103동 옥상 및 101동, 102동 외벽면에 설치되며 태양광 발전에 의한 전기는 공동부 전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위성 및 안테나는 104동 옥상층에 설치되며 됩니다.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파의 우려가 있는 저층, 고층 일부 세대용 수도 계량기의 동파 방지용 열선 또는 동파방지장치가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공용 전기료가 발생함.**
- 경관조명,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기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단위세대 평면 선택에 따라 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기 등의 설치위치, 사이즈, 수량 등이 각 평면타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미건립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전시관 건립 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건물 입면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창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에 따라 창호크기나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 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동 외벽마감은 101동, 102동 일부구간에 커튼월루 및 BAPV가 시공되며, 그 외 마감은 수성페인트 도료로 시공됩니다.
- 일부동 입면에 경관을 위한 조명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해당 동 및 인접 동에 빛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외부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인허가청의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 등에 따라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 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담축에는 삼천포항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주변 도로에 설치 된 신호등, 횡단보도, 안전휀스(보차도경계휀스, 무단횡단방지 휠스, 중앙분리 휠스 등), 어린이보호구역 설정, 도로 유색포장, 가로등, 수목 등을 준공시 인허가청과 협의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주변 현황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모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04동 동측 단지외부에 노외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인접세대에 소음, 진동, 매연발생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홍보물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택전시관 내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 (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단지 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돋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합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사업 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사업주체와는 무관하며, 사업 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기관의 사업으로 추진 중 변경, 지역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것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 분양형토지신탁

- 본 사업은 실질적인 위탁사인 삼천포역사개발 주식회사가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하여 진행하는 분양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삼천포역사개발 주식회사고, 디엠플랜씨(주)는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 의무를 부담하며, 대한토지신탁(주)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공급계약상 공급금액(분양대금)은 대한토지신탁(주)가 지정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동 계좌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급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검사 전 하자 포함)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사가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대한토지신탁(주)에게 하자보수 또는 그에 길용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탁자인 삼천포역사개발주식회사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됩니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건 공급대상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건축허가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상·안전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명칭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 법규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 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 ※ 2019년 8월 20일부터 체결하는 분양권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시자기 징구하여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단위세대 평면, 아이소, 세대VR, 모형,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미납부 또는 전자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 초과 : 35만원). 인지세 납부는 전액 계약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인지세 미납에 의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

- 과세대상 :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
- 납부기한 및 방법  
분양계약 : 계약체결일 / 전매 : 명의변경 승인일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 ●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 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 가산세 개정사항(2021.01.01.부터 적용)(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

-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 6개월 초과 : 무(과소)납부 세액의 300%

### ■ 홈페이지 : www.elife.co.kr

### ■ 주택전시관 위치 및 분양문의 : 경상남도 사천시 용강동 768 (1544-4299)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수백선사판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판계법정이 우선합니다.)